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158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17. 10. 16.
4. 회부일자 : 2017. 10. 24.

II 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내용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내용을 통합하여 포함시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III 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

IV 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[조례안 별첨 참고]

3. 기 타 :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.
- 입법예고(1차 2017.7.4. ~ 7.25., 2차 2017.9.15 ~ 9.24) 결과 : 의견 없음.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폐지조례안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58호로 제출되어 2017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폐지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는 지난 2010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956호로 제정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.

[표]2010~2017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년도	접수 기간	지급 건수	보상금 지급액
2010	2010. 2. 1. ~ 2010. 10. 31.	6	1,550만원
2011	2010. 11. 1. ~ 2011. 6. 30.	9	2,150만원
2012	2012. 1. 1. ~ 2012. 12. 31.	4	1,050만원
2013	2013. 7. 1. ~ 2013. 12. 31.	1	1,000만원
2014	2014. 1. 1. ~ 2014. 12. 31.	1	180만원
2016	2016. 1. 1. ~ 2016. 6. 30.	2	250만원
2017	2016. 7. 1. ~ 2017. 6. 30. (이전 기간 접수 건 포함)	7	5,200만원
합계		30	11,380만원

○ 그러나 2014년 7월 17일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면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게 되었는바, 이로 인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와 동일한 사항이 별개의 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

따라서 동 폐지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보상금 지급 내용이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것이라 하겠는바, 입법의 통일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